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감정평가의 실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보급할 수 있는 기준제정기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기능 및 구성, 지정 절차와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의 수행 요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식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등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추 것 등으로 정함
- 2) 법 제 40조에 따른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을 지정 취소의 요건으로 정함
- 3) 기준제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실무기준의 해석 등으로 하고, 실무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함
- 4)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용도 고려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사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요건을 구체화 함
- 2)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 및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허가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3)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감정평가사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함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 1)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함
- 2) 감정평가사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각 4만원으로 정함
- 3) 경력에 의한 1차 시험면제자의 업무종사기간 산정기준일을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함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구체

화하고, 교육연수 시간을 25시간 이상으로 정함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 · 회계사 · 법무사 · 세무사 등으로 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을 10% 이내로 정함
- 2) 감정평가법인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 수의 기산 기준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명확히 함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 · 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등으로 정함
- 2)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견책은 3개월 등으로 하고, 열람 신청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10년, 업무정지는 5년, 견책은 1년 등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 및 운영, 제·개정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3.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②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기준제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준제정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감정평가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기준제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평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연구
2.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감정평가 실무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⑦ 기준제정기관은 실무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⑧ 기준제정기관은 제7항에 따른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건수”를 “징계건수 및 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 실적

제6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을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검토 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이하 “검토평가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평가사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그간의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을 받은 검토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토결과서의 작성 및 발급, 보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인

2.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허가·등록·계약·사무 등을 수행하려

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평가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말한다.

⑥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평가사의 명단, 업무 현황 및 실적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보고한 검토평가사의 명단과 업무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검토평가사를 포함한다)의 세부적인 기준과 자격, 제6항에 따른 업무현황 및 실적 등의 관리, 그 밖에 적정성 검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를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출입·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와”를 “감정평가법인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4만원으로 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1. 1차 시험 응시 수수료 : 4만원

2. 2차 시험 응시 수수료 : 4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

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일”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으로, “1주일)을 말한다”를 “4주일)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교육연수”라 한다)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실무수습”으로, “이론·실무”를 “이론·실무·직업윤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실무수습”을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로 한다.

④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실무수습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자

2. 교육연수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교육연수에 준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개시 예정일의 변경

2. 주요 경력의 변경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고서”를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22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5명”을 “5명(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정한다)”으로,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토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1.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변리사

2. 제1호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그 밖에 토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을 각각 “법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을 “법 제29조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29조제4항 각 호”를 “법 제29조제5항 각 호”로, “법 제29조제4항제3호”를 “법 제29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29조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을 “30”으로,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을 “소속 감정평가사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회원의 경력관리)”를 “(회원의 전문분야 관리)”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관리의 기준”을 “전문분야의 구분 및 관리”로 한다.

①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전문분야의 구분, 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징계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고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등의 주소·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 및 정지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징계정보를 게시하거나 협회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자격의 취소·등록의 취소 : 3년
2. 업무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3. 견책 : 3개월

③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 정보로 한다.

1. 자격의 취소·등록의 취소 : 10년

2. 업무정지 : 5년

3. 견책 : 1년

④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 협회는 제4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징계정보의 열람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신청의 접수”를 “신청”으로, “영 제18조”를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3호로 한다.

제48조제3호 중 “실무수습”을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39조의2에 따른 징계의 공고에 관한 사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또는”을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 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제정기관에게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급되어 보존하고 있는 감정평가서 원본 및 그 관련 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및 업무종사기간 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감정평가사시험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기준제정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u> <u>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 <u>나.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 <u>2.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연구 및 운영, 제·개정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u> <u>3. 회계의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u> <u>②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u>

려는 민간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또는 규약

3. 사업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이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기준제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준제정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감정평가 기준의 제
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업무
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제정
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
나 국토교통부 및 법 제33조제1
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의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기준제정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감정
평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연구

2.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해석
및 질의에 대한 회신

4. 그 밖에 감정평가 실무기준
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업무

⑦ 기준제정기관은 실무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⑧ 기준제정기관은 제7항에 따른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추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법 제39조에 따른 징계건수

<신설>

4. (생략)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①

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①

협회-----

-----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

여야 한다.

② -----

-- 감정평가법인등을 -----

-----.

1. 2. (현행과 같음)

3. ----- 징계건수

및 내용

4.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부동

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 실적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

----- 해산

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출(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이하 “검토평가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평가사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그간의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을 받은 검토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토결과서의 작성 및 발급, 보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법 제6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인

2.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하여 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허가·등록·계약·사무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검토평가사를 2인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말한다.

⑥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검토평가사의 명단, 업무현황 및 실적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이 보고한 검토평가사의 명단과 업무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검토평가사를 포함한다)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생략)

②·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착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정평가업자와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 세부적인 기준과 자격, 제6항에 따른 업무현황 및 실적 등의 관리, 그 밖에 적정성 검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

1. -----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출입·검사-----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법인등과 -----

-----.

1. ~ 4. (현행과 같음)

⑤ -----

감정평가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수수료) ① 법 제14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4만원으로 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수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감정평가법인등 -----

-----.

⑥ -----

----- 감정평가법
인등-----

-----.

제13조(응시수수료) ①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시험 응시수수료: 4만원
2. 2차 시험 응시 수수료: 4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 9. (생략)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제15조(실무수습기간)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는 1주일)을 말한다.

<신설>

----- 반환해야 -----.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① -----

-----.

1. 감정평가법인등

<삭제>

2. ~ 8.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② -----

-----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

-----.

제15조(실무수습기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

----- 4주일)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교육연수”라 한다)의 시간은 2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실무수습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을 받는 사람은 실무수습기간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실무 및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실무수습

제16조(실무수습사항) ① -----
----- 실무수습-----

----- 이론·실무·직업윤리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실무수습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자
2. 교육연수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교육연수에 준용한다.

⑥ 실무수습 및 교육연수-----

-----.

제17조(등록) ① -----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20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감정평가사는 신고서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신고사항이 변경(소속 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되었을 때에는 변경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개시 예정일의 변경

2. 주요 경력의 변경

<삭제>

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휴업하
거나 폐업한 감정평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
하려는 감정평가사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교
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
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
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
입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
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3조제4
항에 따라 협회가 운영하는 공
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

제21조(합동사무소의 개설 절차
등) ① -----

----- 등록신청
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수료 등의 공고) -----

--- 감정평가법인등-----

-----.

제23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
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

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신 설>

<신 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

-----.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

-----.

제24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90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토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1. 변호사 · 회계사 · 법무사 · 세무사 · 기술사 · 건축사 · 변리사

2. 제1호와 관련된 전문분야의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
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감정
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
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
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를 받으
려는 자는 사원(社員)이 될 사
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인가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
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3. 그 밖에 토지등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
는 자

③ 법 제29조제4항 -----
-----5
명(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정하
다)-----.

④ 법 제29조제4항-----

-----.

1. 2. (현행과 같음)

제25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29조제5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29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에의 적합 여부
2. (생략)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

제5항 -----

-----.

1.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
2. (현행과 같음)

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법 제29조제5항 -----
----- 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9조제5항 각 호 -----

----- 법 제29조제5항제3호-----
-----.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
----- 감정평가법인-----
-----.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

립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공제사업 등)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공제사업에 출자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회원의 경력관리) ① 협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

립인가) ① -----

-- 감정평가법인등-----
----- 30-----

----- 소속
감정평가사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인-----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공제사업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회원의 전문분야 관리) ① 협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의 기준에 대하여 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설>

전문분야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전문분야의 구분, 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
--- 전문분야의 구분 및 관리-----.

제36조의2(징계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고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및 소속 감정평가법인등의 주소·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 및 정지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징계 정보를 게시하거나 협회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자격의 취소·등록의 취소 :

3년

2. 업무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다만, 해당 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

3. 견책 : 3개월

③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징계 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 정보로 한다.

1. 자격의 취소·등록의 취소 :

10년

2. 업무정지 : 5년

3. 견책 : 1년

④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가 징계 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
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2. 해당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
가를 의뢰하려는 의사 및 징
계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신청
서 및 그 첨부서류를 협회에 직
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징계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 협회는 제4항의 신청을 받으
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
청인에게 징계정보를 제공하여
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해
당 감정평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징계정보의 열람 신청 및 제
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전통지

3. 법 제21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3의2. (생략)

4. (생략)

③ (생략)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

제47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신청 -----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제18조-----

<삭 제>

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2. (생략)

3.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갱신등록 및 그 거부에 관한 사무

4. ~ 10. (생략)

<신설>

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에 두는 최소

-----.

1. 2. (현행과 같음)

3. -----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

4.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9조의2에 따른 징계의 공고에 관한 사무

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①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 법 또는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제정기관에게 검토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

감정평가사의 수에 대하여 <u>2017</u> <u>년 1월 1일</u>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 <u>2023</u> <u>년 1월 1일</u>----- ----- ----- ----- -----.
---	--